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698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5년 6월 16일
제안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체계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련 통계정보 수집·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7조제1항)
- 정신건강 분야 지역사회 연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을 “경제상태, 생활양식 및 정신건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2조 중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 시행과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지원”으로, “체결 할”을 “체결할”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7조(실태조사 등)</p> <p>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7조(실태조사 등)</p> <p>① _____ _____ _____ 실시하고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지원시설 등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제7조(실태조사 등)</p> <p>① _____ _____ 경제상태, 생활양식 및 정신건강 _____ 실시하고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u><개정안 삭제></u></p>
<p>제1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u>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u>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p>		<p>제1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 시행과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을 “경제상태, 생활양식 및 정신건강”으로, “실시”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으로 한다.

제12조 중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 시행과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지원”으로, “체결 할”을 “체결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u>경제상태 및 생활양식</u>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u>실시</u>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u>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u>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제7조(실태조사 등) ① ----- ----- ----- <u>경제상태, 생활양식 및 정신건강</u> ----- ----- <u>실시</u>하고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 <u>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 시행과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지원</u>----- ----- ----- <u>체결</u>할 ----- -----.</p>